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91
----------	-----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2. 11.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6. 2. 15.
3.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 나.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 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 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 바.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자가(自家)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
- 자. 역학조사관과 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검역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 차.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카.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민간 의료인력 및 민간시설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호, 제25호, 제26조)
- 타. 감염병관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 파.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정명령 및 효율적인 감염병 위해방지를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
- 하. 시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예산안 반영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부패와 무관
  - 3)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개선권고 내용	검토의견 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 시민이 <u>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지역적 조건</u> 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 필요	◦ 반영 - 제출 의견에 대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u>차별 요소가 없도록 규정 명확화</u>

개선권고 내용	검토의견 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성별·연령별 현황 등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계획 포함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9조(실태조사) ○조사시 감염병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는 조사항목 포함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10조(역학조사) ○검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등의 특성 고려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11(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성별·연령별·계층별 등을 고려하고, 재해상황 발생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의 약자에 대한 고려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어린이집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지원 .....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시설격리조치 시에 성별·나이·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적합한 서비스 지원필요	○일부반영 및 미반영 - 돌봄지원 대상 “유치원” 일부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마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4) 입법예고(2015. 10. 29. ~ 11. 18.) 의견제출

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의견제출 내용	검토의견 내용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119구급대에 의한 감염병환자 이송 후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감염병관리기관 및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처리 필요	○일부수정 반영 -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구분하여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 <u>감염성 폐기물</u> ’을 ‘ <u>의료폐기물</u> ’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

의견제출 내용	검토의견 내용
<p>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p> <p>○“119안심도움전담반”은 한시적 구성·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조례 조문으로 명문화는 부적절하여 삭제 필요</p>	<p>○<b>반영</b></p> <p>- <u>한시적 사용명칭</u>에 대해 조례 조문으로 사용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b>삭제</b> 의견 반영</p>

5) 기타 검토사항

조례안	검토결과 내용
<p>제21조(역학조사관)</p> <p>○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서울시소속 공무원으로 <u>5명 이상</u>의 역학조사관을 둔다</p>	<p>○<b>일부수정 반영</b></p> <p>- 법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u>2명 이상</u>의 역학조사관을 둔다”의 법령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u>5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수정</u> 반영</p>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제정안의 취지

- 최근 감염병(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 발생시 효율적 대응 마련을 위해 제정안이 제안되었음.

#### 2 제정안의 필요성

- 최근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에 대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등이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사항(2015년 12월)을 반영하고 집행부 차원의 각종 공중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동호흡기증후군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가. 시장과 의료인의 책무 등(안 제3조와 제4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3조(시장의 책무)</b>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 ~ 12.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1. ~17. (생략)</p> <p>③ ~ ④ (생략)</p>
<p><b>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b> 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p> <p>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b>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p> <p>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 제정안 제3조,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서울시 보건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시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적극 협조 의무를 부과하였음.

- 감염병 예방·진료에 관한 의료인·의료기관의 권리와 책무를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치료에 적극적인 대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감염병 예방 등에 소요된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국가와 서울시)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일부 분담할 경우 재원 조달의 방법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5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b>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p> <p>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p>	<p><b>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b>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p> <p>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p>



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제정안 제5조,

시민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부담한 비용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정안은 시민에게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와 격리·치료 등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집행부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격리대상자의 긴급생계비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감염병 환자 및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미비한 문제점을 제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의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p>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	---

□ 제정안 제6조,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여론을 감안할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집행부의 주요한 시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대유행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대규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임.

- 또한 제정안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감염병위기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7조(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b></p> <p>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b>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정안 제7조,**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이하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그러나 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을 구성·운영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지원단을 별도로 설립하게 되면 방만한 지원조직운영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시행계획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별도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의료 인프라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시행계획 시행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마. 자료제공 요청(안 제8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b>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b>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b>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⑤ ~ ⑧ (생략)</p>

□ 제정안 제8조,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나, 시장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시민이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혼란 등을 초래하여 전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제정안이라고 하겠음.

**바. 실태조사와 역학조사(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9조(실태조사)</b>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내용을 포함한다.</p>	<p><b>제17조(실태조사)</b>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역학조사)</b>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 역학조사 실무관을 둘 수 있다.</p> <p>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p>	<p><b>제18조(역학조사)</b>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개정전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였으나, 감염병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실태조사의 권한을 부여한 바, 제정안 제9조는 이를 반영한 내용임.
-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신종감염병의 출현, 해외와의 활발한 교류 등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감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제정안 제10조,

시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의 역학조사 실시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의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금지하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의 감염병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열 여부,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진(問診)<sup>1)</sup>을 통하여 환자의 감염지역 여행(경유) 여부, 감염병

확진환자와 접촉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환자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부과는 감염병환자 등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제정안 제10조는 시장의 역학조사를 담당할 역학조사반 설치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을 비롯하여 감염병조사관, 역학조사실무관<sup>2)</sup>을 둘 수 있으며,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그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바, 조례를 통하여 역학조사관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참고자료-1 참조)

#### 사.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안 제11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b>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1)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및 발병 시기, 경과 등을 묻는 일

2) 감염병조사관 : 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업무 외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편성 실무지도 역할  
 역학조사실무관 : 보건관련 7급 이상 공무원 중 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을 이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실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li> <li>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li> <li>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li> <li>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li> <li>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li> <li>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li> <li>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li> <li>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li> <li>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li> <li>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li> <li>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 ④ (생략)</p> <p>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

□ 제정안 제11조,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감염병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서울시 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 점염병 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 적절한 내용이라고 사료됨.



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b>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u></p>	<p><b>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b>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u></p> <p>④ ~ ⑤ (생략)</p>
<p><b>제13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b></p> <p>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li> <li>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li> </ol>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p>	<p><b>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li> <li>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li> </ol>

<p>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p> <p><b>제27조(손실보상)</b>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p> <p>⑤ (생략)</p> <p><b>제70조(손실보상)</b>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li> <li>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li> <li>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li> <li>4. 5. (생략)</li> </ol> <p>② ~ ④ (생략)</p>
--	--

□ **제정안 제12조와 제13조,**

「감염병예방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특히 제정안 제13조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부족한 감염병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한시적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제정안 제27조,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입은 그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임.

-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공공의 필요에 대한 특정 개인의 손해를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 이러한 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으로서 의료기관·의료인 등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한편, 제정안(안 제12조 및 제13조)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를 통해 시민이 예측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안 제12조 제3항은 「감염병예방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고권은 자치행정의 구체적인 발현인 동시에 자치권의 본질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 간의 세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의 재정적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시행에 장애물이 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과도한 위임위법과 위임사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제도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 등 재정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轉嫁)하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재정고권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 제·개정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 분명한 의견 개진을 비롯하여 위헌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안 제15조 및 제24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

<p>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li> <li>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li> </ol> <p>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li> <li>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li> <li>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li> <li>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li> <li>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li> <li>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li> <li>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li> <li>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li> </ol>	<p>(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li> <li>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li> </ol> <p>④ (생략)</p>
--	---

□ 제정안 제15조,

전파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염병관리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부족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등에서 격리되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염 우려자에 대한 이동제한 효과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제정안 제24조,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격리치료자가 외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차.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처분 등(안 제16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p>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 ⑨ (생략)</p>
---	---

□ 제정안 제16조,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통해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 그러나 해당 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바, 이에 방문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규정을 마련하였음.
- 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으나,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 수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권한 강화(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제28조(조정명령)</b>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 ② (생략)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p><b>제29조(행정응원)</b> ① 시장은 역학조사, 예방</p>	

<p>접종 등 각종 방역대책을 수행하면서 감염병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b>제30조(협력체계 구축)</b>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p>
---	--

□ **제정안 제28조와 제29조,**

두 개 이상의 자치구가 관계된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감염병 발생시 서울시가 원활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제정안 제30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간의 정보의 공유와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정안이 갖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문1 역학조사반 구성 및 체계 강화 계획

### □ 현 황

-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자치구 역학조사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1명에 불과해 메르스 유행시 초동 대처에 한계, 자치구 역학조사를 지휘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 곤란

- 소수의 공중보건의를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관에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

총원	중앙역학조사관	시도역학조사관 (각 1명, 경기도 2명)	검역소 역학조사관
34	14	18	2

- 신종감염병에 대한 평시 교육·훈련 미흡으로 자치구 실무자들의 전문역량이 낮아 효과적인 현장조치 수행 곤란

-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FMTP)<sup>3)</sup> 수료자 : 연평균 15.4명(보건소별 0.6명)

총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77	16	11	9	16	25

- '14년 감염병 담당 공무원 중 교육이수자 비율 : 144명 중 21명(14.5%)에 불과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급속히 확산 되는 속도에 비해 역학조사반 조직확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 발생

※ 금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진환자 동선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반 긴급 편성운영(10개반 50명)

3) FMTP :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감염병 현장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시간 : 232시간)

## □ 역학조사 대응능력 향상 방안

1

### 역학조사 전문인력 양성·확대

역학조사 전문인력 확충 : 1 → 57명

의사

역학조사관 확대 (시) 1 → 3명

감염병조사관 신규양성 (구) 25명

보건인력

— 역학조사실무관 신규양성 (시, 구) 27명 (시2, 구25)

#### ① 역학조사관 확대 : 1 → 3명 (서울시)

○ 역학조사관의 임무 : 환례정의, 접촉자 범위 및 격리구분 설정, 원인규명, 유행여부 판정 등

#### ○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역학조사관 추가 확보 1 → 3명

- 임기제 공무원 2명 신규 채용 및 내부직원 1명 임명

#####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 2명

· 채용시기 : '16 신규 채용 ('16 신규 역학조사관 교육, 3주간)

· 주요역할 : 역학조사 및 감염병 관리업무 수행

✓ 평 시 : 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감염병 감시 및 분석 등

✓ 유사시 : 감염병 역학조사 전담 수행

※ 향후 지역 전문가를 활용 점진적으로 역학조사관 임명 확대 추진

② **감염병조사관<sup>4)</sup> 신규 양성 : 0 → 25명** (자치구별 1명)

○ 감염병조사관의 임무 : 조사범위, 환자대조군 조사 결과분석, 검체방법 등 신속대응 실무 지도

○ **대 상** : 보건소 진료의사(결핵실, 예방접종실 등) 중 **감염병전문교육 이수자**

○ **역 할** : 진료업무 외 보건소 역학조사반에 편성, 상황 발생시 주도적 참여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인재개발원, 시립대 보건대학원)

③ **역학조사실무관<sup>5)</sup> 신규 양성 : 0 → 27명** (서울시 2, 자치구 25)

○ 역학조사실무관(보건요원) 임무 : 환자, 접촉자 모니터링, 동선 파악, 사례조사 등

○ **대 상** : 시·자치구 방역담당 공무원 중 **감염병전문교육 2개과정 이수자**

-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과정’, ‘감염병 전문가 교육 훈련(FMTP)<sup>6)</sup>’ 이수자

<b>【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과정】</b>	<b>【감염병 전문가 교육 훈련(FMTP)】</b>
- 교육기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기간 : 1주 교육(매년 3월, 9월) - 교육내용 : 감시체계, 통계실무, 검체관리 역학조사 이해 및 실무 등	- 교육기관 : 질병관리본부(인제대학교) - 교육기간 : 232시간(주 2일씩 3~11월 교육) - 교육내용 : 감염병 이해, 감염병 예방 개별 과제 수행, 과제 지도, 평가 등

○ **구 분** : **감염병 담당 공무원 27명**

- 서울시(2명) : 감염병 전문관 1명 및 역학조사 전문관 1명 지정

- 자치구(25명) :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7급이상) 중 보건소장 추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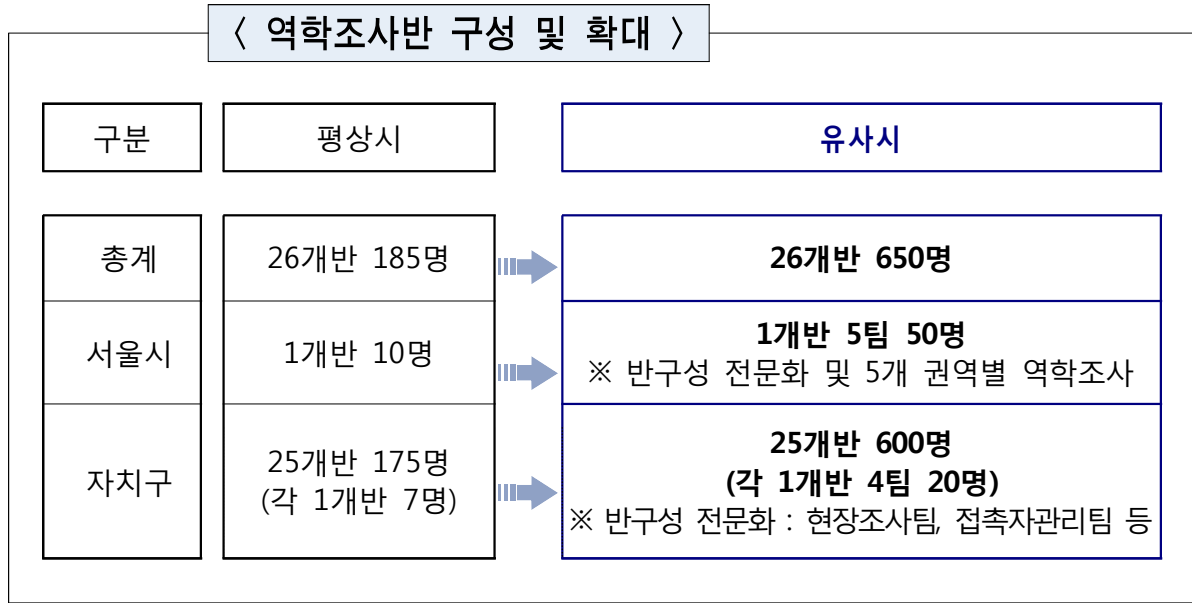
4) 감염병조사관 : 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업무 외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편성 실무지도 역할

5) 역학조사실무관 : 보건관련 7급 이상 공무원 중 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을 이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실무자

6) FMTP :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 2

##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역할 재정립



### 평 상 시

① 구 성 : 26개반 185명

○ 서 울 시 : 1개반 10명 운영

- 반 장 : 생활보건과장

- 반 원 : 총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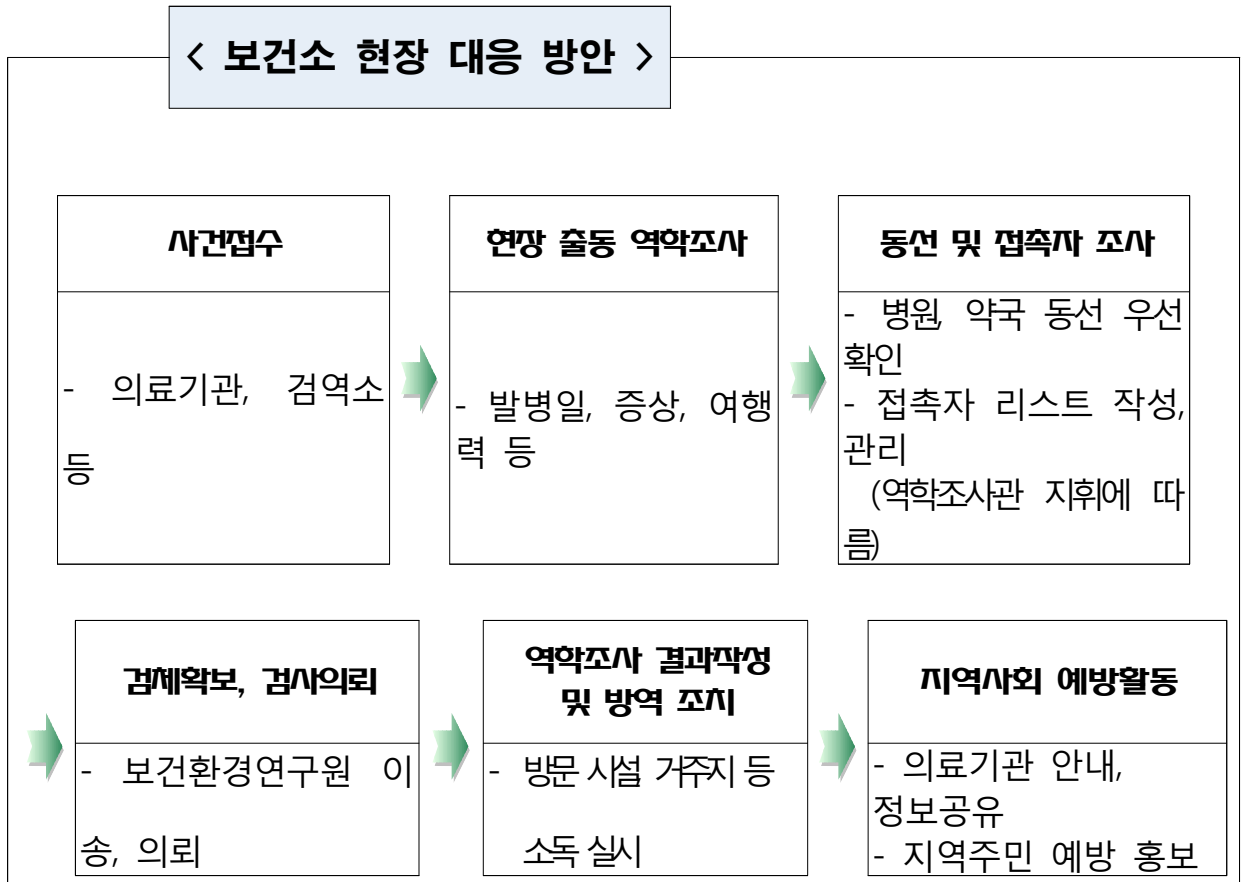
- 역학조사관 1명, 보건요원 4명(감염병관리팀2,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2), 간호 및 운전요원 2명(생활보건정책팀), 검사요원 2명(보건환경연구원)

○ 자 치 구 : 1개반 7명 운영 (25개반 175명)

- 반 장 : 보건소장

- 반 원 : 6명(의사1, 보건1, 간호1, 행정1, 검사1, 운전1)

## ② 역할



### ○ 시도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감염병관리사업 지침(질병관리본부)

- 대상 감염병 : 일본뇌염, 발진티푸스, 브루셀라증, 큐열 등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신고 접수</li> <li>· 환자 및 환경조사, 유행여부 판단</li> <li>· 환자 검체 및 이송 여부 결정</li> <li>· 환자 접촉자 조사, 격리수준 및 범위 결정</li> <li>· 역학조사 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li> <li>·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li> <li>· 기초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검체환자이송</li> <li>· 서울시 역학조사 동행, 조사지원</li> <li>· 필요시 접촉 장소 방역 소독</li> </ul>

○ 자치구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감염병관리사업 지침(질병관리본부)

- 대상 감염병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풍진,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등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신고 접수</li> <li>· 자치구 역학조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례정의 및 조사 디자인 지도</li> <li>- 역학조사 추가사항 지도, 격리수준 결정</li> </ul> </li> <li>· 자치구 역학조사 보고서 검토</li> <li>· 유행여부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li> <li>·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li> <li>· 질병별 역학조사서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섭취력,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li> </ul> </li> <li>· 필요시 검체 및 환자이송</li> <li>· 필요시 접촉 장소 방역 소독</li> <li>· 역학조사 보고서 서울시 제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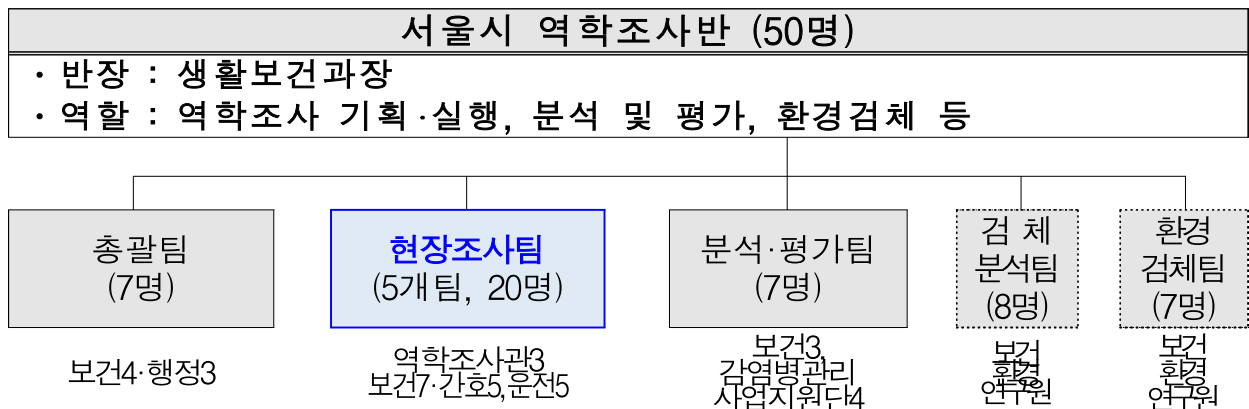
## 유 사 시

### ① 구 성 : 26개반 650명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이상 발령 후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 ○ 서 울 시 : 1개반 5개팀 50명 운영

- 반 장 : 생활보건과장
- 팀 구 성 : 총괄팀, 현장조사팀, 분석·평가팀, 검체분석팀, 환경검체팀
- 반 원 : 49명(역학조사관3, 보건14, 간호5, 행정3,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4, 운전5, 검사(보건환경연구원)15 > 시민건강국 인력 파견 근무



## 〈5개 권역별 역학조사 구역 책임제 시행(현장조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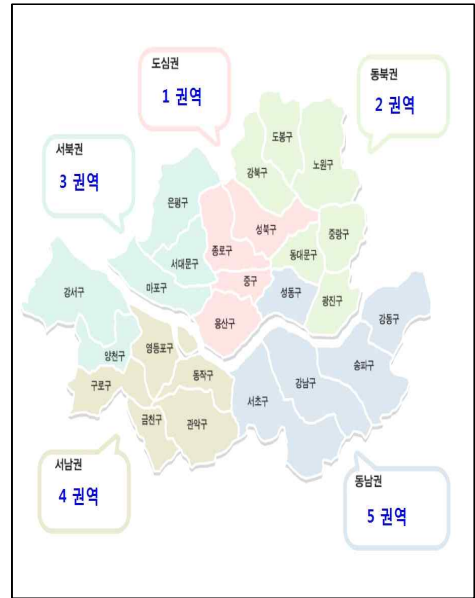
### ◇ 현장조사팀 구성

- 5개팀 총 20명으로 구성
- 팀별 4명(역학조사관 또는 보건 1~2명, 행정 1명, 운전원 1명)

### ◇ 현장조사팀 권역별 지원지역

- 1팀 : 1권역(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2팀 : 2권역(동북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 3팀 : 3권역(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 4팀 : 4권역(서남권: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 5팀 : 5권역(동남권: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권역 구분 기준 : 상급 종합병원 수 및 주거환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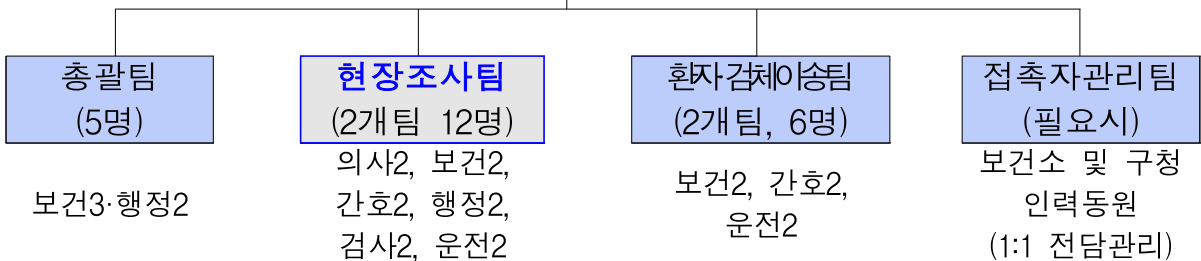


## ○ 자치구 : 구별 1개반 4개팀 24명 (총 25개반 600명)

- 반 장 : 보건소장
- 팀구성 : 4개팀(총괄팀, 현장조사팀, 환자·검체이송팀, 접촉자관리팀)
- 반 원 : 19명(의사2, 보건5, 간호3, 행정4, 검사요원2, 운전원3명)  
기타 접촉자 관리 인력(00명) > 보건소 / 구청 인력 파견 근무

### 자치구 역학조사반 (24명 이상)

- 반장 : 보건소장
- 역할 : 기초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환자 이송 등



※ 현장조사팀은 기초역학조사 수행 및 서울시 현장조사팀과 역학조사 수행 대규모 발생으로 환자·검체이송팀 부족시 전문이송기관을 통해 이송지원 실시

## ② 역할

### ○ 서울시 및 자치구 업무절차

조사 절차	신고 단계	⇒	조사 단계	⇒	완성 단계
역학조사	자치구 역학조사반	⇒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조사반	⇒	중앙 역학조사반
조사 결과	기초 역학조사 실시	⇒	동선 파악 및 접촉자 명단 작성 및 격리구분 설정	⇒	접촉자 범위 확인, 추가조사 여부 검토, 후속조치 계획 수립
		⇒	역학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	역학조사 보고서 완성본 작성

### ○ 기관별 대응 절차 (보건소,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조치내용	조치기관
① 의심환자 발생 인지	의료기관 등 → 보건소(총괄팀) → 서울시(총괄팀)
② 현장 출장 기초 역학조사 실시 - 최초 증상(발생일), 현 증상, 보유질환,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	보건소(현장조사팀)
③ 의심환자 해당여부 및 격리병상 이송여부 판단	서울시(현장조사팀)
④ 환자 검체 보건환경연구원 이송	보건소(이송팀) → 서울시(검체분석팀)
⑤ 환자 격리병상 배정 및 환자 이송	서울시(총괄팀) → 보건소(이송팀)
⑥ 동선별 접촉자 조사 및 격리구분 설정 - 이동 동선 및 접촉자 확인 곤란시 CCTV,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	서울시 및 보건소(현장조사팀)
⑦ 동선별 주요시설 방역소독 및 지역사회 예방활동	보건소(총괄팀)
⑧ 접촉자 자가격리 등 통보 및 관리	보건소(접촉자관리팀)
⑨ 역학조사보고서 제출	서울시(현장조사팀) → 중앙역학조사반



□ 추진일정

-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역학조사 실무관 교육 : '16 상반기
-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조사관 신규 교육 : '16년 상반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조사관”이란 보건소 진료의사 중에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4. “역학조사실무관”이란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과정 등)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

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1.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매뉴얼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

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 역학조사실무관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5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이송 후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감염병관리기관 및 보건소에서 처리하게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방역소독 실시권고)**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검역위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교육과 훈련)** 시장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25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7조(손실보상)**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28조(조정명령)**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응원)** ① 시장은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각종 방역대책을 수행하면서 감염병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